

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

[시행 2023. 12. 18.] [조례 제2332호, 2023. 12. 18., 일부개정]

세종특별자치시(동물방역위생과), 044-300-7622



제8조의2(길고양이의 관리 등)

-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, 2022. 12. 20.]